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18호)

2026. 2.

재 정 경 제 기 획 위 원 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23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영진의원 등 12인

나. 발 의 일 : 2025. 12. 9.

다. 회 부 일 : 2025. 12.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복권수익금 중 100분의 35(이하 “총배분비율”)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의 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복권위원회가 각 기금의 자금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총배분비율이 고정되어 있어 기금별 실제 지출수요 및 재정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 기금에서는 배분금이 여유자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등 복권수익금의 효율적 사용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에 배분되는 비율을 조정할 때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탄력적 운영 근거 마련(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만, 복권위원회는 <u>자금소요</u>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사업 -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u>을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다만, 복권위원회는 <u>자금소요, 여유 자금운용 현황</u> 및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음.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이라 함)」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기관·기금 등에 배분¹⁾하고, 나머지 수익금은 저소득·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4. 삭제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7. 지방자치단체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복권기금 지원사업비의 배분 및 용도]

(단위: 억원)

구분	2026년도 계획액	용도
법정배분 사업	11,430	· 과학기술진흥기금 전출 ·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 · 근로복지진흥기금 전출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전출 · 국가유산보호기금 전출 · 지방자치단체 지원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원
공익사업	22,598	·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 소외계층 복지사업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문화·예술 진흥사업

※ 자료: 기획예산처

「복권법」은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택법, 산림법 등에 근거하여 10개의 기관으로 분산된 복권발행기관을 국무총리 소속²⁾하에 설치한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복권기금을 신설하여 이를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되었음.

「복권법」 제정 당시 복권기금의 수익금 중 30%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기존 10개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하도록 법정배분 제도를 규정하였음. 이후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이 제정됨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³⁾이 추가되면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하였음.

그러나 복권수익금이 정률 배분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1년 「복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복권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2) 현재는 기획예산처장관 소속임.

3) 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배분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⁴⁾ 2016년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음.⁵⁾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 주요연혁]

- 2004년: 복권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권발행기관을 복권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복권법 제정 시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복권수익금 중 30%를 기존 10개 발행기관에 배분하도록 법정배분제도를 규정함.
- 2009년: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에 따라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재보호기금(현행 국가유산보호기금)이 추가되면서 이를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을 복권수입금의 35%로 상향 조정함.(10개 → 11개 / 30% → 35%)
- 2011년: 복권법 개정을 통해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2016년: 복권기금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법정배분대상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제외함(현재 공익사업으로 지원 중).(11개 → 10개)

개정안은 복권수익금의 35%로 고정되어 있는 총배분비율을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20%의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때 자금소요 및 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복권기금의 운용·관리 및 평가) ③ 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된 사업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이하 “복권기금사업”이라 한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제27조에 따른 복권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100분의 35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5) 다만, ‘주택도시기금’이 법정배분기관에서 제외되었음에도(11개 기관 → 10개 기관), 배분비율은 동일하게 35%로 유지되는 중임.

함께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 보임.

첫째, 현행 법정배분제도는 경직된 배분구조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제도 개편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배분제도는 「복권법」 제정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법정배분기관은 사업을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그러나 「복권법」이 제정된 2004년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정배분율이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복권법」 제정 당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복권수익금 지원 없이 자체 사업 운용이 가능한 기금·기관에도 복권수익금이 배분되거나,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 사업 수요가 있음에도 기관별 배분비율을 초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음에 따라 제한된 규모로 지원된 경우가 발생하는 등 법정배분기관의 재정 상황 및 사업 필요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복권수익금이 정률 배분되면서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정배분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법정배분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배분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법정배분사업 기금·기관 및 배분비율]

(단위: %)

구분		과학기술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근로복지 증진기금	중소벤처 기업진흥 기금	국가유신 보호기금	지 방 자치단체	제주도 특별회계	사회복지 모금회	산림환경 증진기금	보훈복지 의료공단
법정배분 비율		12.583	10.371	5.310	6.356	14.286	17.267	17.267	4.286	5.846	6.428
실제 배분비율 (가감 후)	2024 년도	12.017	8.838	6.106	6.992	14.674	16.335	17.267	4.008	7.015	6.749
	2025 년도	12.461	8.324	5.576	7.474	13.075	17.253	17.267	4.286	7.015	7.269
	2026 년도	10.066	8.297	5.307	7.288	14.929	18.034	17.265	4.145	7.015	7.654

자료: 기획예산처

[가감조정에 따른 2026년 복권기금 법정배분 계획액]

(단위: 억원)

평가 순위	법정배분기 관	25년 최종 배분액	가감조정					24년 결산 차액 (E)	최종 배분 계획액 (F=A+B+C+D+E)	증감 (F-A)	
			기초 법정 배분 (A)	1단 계 (B)	2단 계 (C)	3단 계 (D)	가감율 (%)				(%)
	합 계	11,051	11,473	△8	△366	374	-	△43	11,430		
1	산림환경증진자금	775	671	134	-	-	20.0%	△3	802	131	19.6
2	보훈복지의료공단	801	737	111	-	30	19.1%	△3	875	138	18.7
3	중소벤처진흥기금	826	729	73	-	34	14.7%	△3	833	104	14.2
4	국가유신보호기금	1,448	1,639	74	-	-	4.5%	△6	1,706	67	4.1
5	지방자치단체	1,906	1,981	-	-	88	4.4%	△7	2,062	81	4.1
6	과학기술진흥기금	1,374	1,444	-	△289	-	△20.0%	△5	1,150	△294	△20.4
7	제주도특별회계	1,908	1,981	△79	-	79	0.0%	△7	1,973	△8	△0.4
8	근로복지증진기금	617	609	△61	-	61	△0.1%	△3	606	△3	△0.5
9	국민체육진흥기금	920	1,190	△161	△77	-	△20.0%	△4	948	△242	△20.3
10	사회복지모금회	474	492	△98	-	82	△3.3%	△2	474	△18	△3.6

자료: 기획예산처

※ (1단계) 평가결과에 따라 하위 4개기관 감액 후 상위 4개 기관에 배분

(2단계) 기관 자체수입·여유자금 및 사업수요 등 감안 추가 감액

(3단계) 감액재원을 성과 우수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에 가산

(결산차액) 복권법 시행령 제17조 제7항에 따라 '24년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기 배분된 금액 차액을 정산

그러나 가감 조정을 하더라도 기본배분액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야 하므로 법정배분기관의 자금 소요 및 사업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법정배분된 금액 만큼 사업을 편성하지 못하여 법정배분금 중 일부가 여유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자체 수입원이 있어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이나 기금에 대해서도 법정배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이 지급된다는 문제도 있음.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여유자금 규모가 666억원 수준으로 사업비 대비 상당한 규모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여유자금 309억원을 운용할 계획임.

[최근 5년간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사업비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A)	103,562	110,264	92,534	99,566	89,643
여유자금운용(B)	61,692	55,861	91,104	93,519	30,865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운용 규모 (B/A)	59.6	50.7	98.5	93.9	34.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025년은 수정계획 기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도 최근 5년 평균 여유자금 규모가 7,527억원 수준으로 사업비 대비 상당한 규모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에도 여유자금 9,273억원을 운용할 계획인 것으로 볼 때, 자금 여력이 충분하여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배분율에 따라 복권수익금이 지급된다는 문제도 있음.

[최근 5년간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업비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사업비(A)	1,809,107	1,634,789	1,590,644	1,638,813	1,678,162
여유자금운용(B)	367,495	839,373	1,037,697	591,590	927,310
사업비 대비 여유자금 운용 규모 (B/A)	20.3	51.3	65.2	36.1	55.3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2022~2025년은 수정계획 기준

이와 같이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는 경직된 배분구조로 인해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속적인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법정배분 대상 기금·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 완화를 위한 개편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취약계층 보호 등 복지 분야에서 국가재정 지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 여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복권수익금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집행은 취약계층 등 국민의 복지증진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의 운용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총배분비율을 35%의 범위 안에서 복권위원회가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20%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때 자금소요 및 평가 결과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할 경우,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복권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현재는 법정배분비율의 20% 내에서 가감조정(1단계·2단계) 이후 총배분비율 35%를 준수하기 위하여 추가배분(3단계)이 이루어지는 상황임.

[현행 법정배분비율 가감조정제 절차 요약]

구분	내용
1단계 (성과배분)	○ 성과평가(90%)와 자금소요평가(10%)를 가중평균한 기관순위에 따라 하위기관(4개)에서 감액하여 상위기관(4개)에 추가 배분
2단계 (추가감액)	○ 기관 자체수입·여유자금 등 현황분석 결과 및 차년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 범위 내 감액 가능
3단계 (추가가산)	○ 1단계 배분 후 잔여재원 및 2단계 추가 감액재원을 사업계획 심사 후 배분 * 사업수요 및 기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최대 20% 범위 내 증액

자료 :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재구성 (상세 별첨2 참고)

개정안에 따르면 복권위원회가 총배분비율을 100분의 3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추가배분 없이 성과평가 및 여유자금 운용 현황 등에 기반한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감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 예를 들어, 기획예산처는 2026년도 계획액에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35%를 준수하기 위한 추가배분을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현행 최종배분액 대비 개정 시 최종배분액이 총 3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6년 복권기금 법정배분액 현행 및 개정 시 비교표]

(단위: 억원)

평가 순위	법정배분기관	현행 최종배분액 (A)	개정 시 최종배분액 (B)	증감 (B-A)
	합 계	11,430	11,056	△374
1	산림환경증진자금	802	802	-
2	보훈복지의료공단	875	845	△30
3	중소벤처진흥기금	833	799	△34
4	국가유산보호기금	1,706	1,706	-
5	지방자치단체	2,062	1,974	△88
6	과학기술진흥기금	1,150	1,150	-
7	제주도특별회계	1,973	1,894	△79
8	근로복지증진기금	606	546	△60
9	국민체육진흥기금	948	948	-
10	사회복지모금회	474	392	△82

자료 : 기획예산처 제출자료 재구성

둘째, 법정배분비율이 35%보다 낮아질 경우 그만큼 공익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할 수 있음.

현행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의 법정배분기관·기금 등에 배분하도록 하고, 복권수익금의 나머지 65% 및 기타수입금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복지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⁶⁾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로 한다.

1.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
2.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사업
3. 저소득층, 장애인,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여성, 불우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4. 문화·예술 진흥사업
5.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현행 복권수익금 배분체계]

단위: %, 억원)

복권수익금	35%	법정배분사업	<법정대상기관>		배분비율	'25 계획	'26 계획
			과 학 기 술 진 흥 기 금	12.583	1,374	1,150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10.371	920	948	
			근 로 복 지 진 흥 기 금	5.310	617	60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6.356	826	833	
			국 가 유 산 보 호 기 금	14.286	1,448	1,706	
			지 방 자 치 단 체	17.267	1,906	2,062	
			제 주 개 발 특 별 회 계	17.267	1,908	1,973	
			사 회 복 지 공 동 모 금 회	4.286	474	474	
			산 림 환 경 증 진 자 금	5.846	775	802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6.428	801	875	
	< 소 계 >		100.0	11,051	11,430		
	65%	공익사업	<공익사업 분야>	<사업수행기관>	'25 계획	'26 계획	
			저소득 주거안정	주 택 도 시 기 금	4,500	4,000	
			국가유공자 복지	보 훈 기 금	216	231	
			저소득·소외계층	양 성 평 등 기 금	7,769	8,066	
				청 소 년 육 성 기 금	1,513	1,290	
				기 후 대 응 기 금	1,076	1,069	
				보 건 복 지 부	1,045	1,116	
				금 융 위 원 회	1,964	3,500	
교 육 부				258	371		
법 무 부				22	28		
문화·예술진흥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2,677	2,809		
			영 화 발 전 기 금	45	13		
재해·재난 구호			응 급 의 료 기 금	64	56		
			행 정 안 전 부	50	50		
< 소 계 >			21,199	22,598			
< 총 계 >			32,251	34,028			
기타수입							

※ 자료: 기획예산처

따라서, 복권위원회에서 각 법정배분기관의 자금소요 및 여유자금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배분비율을 35% 범위 이내에서 하향 조정할 경우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지원액이 증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복권수입금을 지원받아 진행하고 있던 다양한 공익사업에 추가적인 재정을 투입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도 현행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는 복권 통합 이전의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고착화된 현행 35% 고정 배분 체계가 기관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기관에도 예산이 배분되고, 가감조정 이후에도 총량 준수를 위해 기관에 추가 배분해야 하는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총배분율을 '35% 범위 내'로 개정하여 탄력적 운용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다만, 가감조정(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20% 범위인 조정 폭을 최대 40%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임.⁷⁾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법정배분비율이 35% 범위 이내에서 하향 조정될 경우 복권수

7) 예를 들어, 과학기술진흥기금의 경우 '26년 편성 시 가감조정 최대 폭인 20%를 감액조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이 편성되었음

익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법정배분 수혜기관의 반발이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복권수익금을 지원 받아 진행하고 있던 사업의 중단·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직접적인 복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의 경우 재원 감소가 자칫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배분 비율 조정 시 해당 기관과의 사전 협의 및 단계적 적응 기간 부여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총배분비율을 35%의 범위 안에서 실제 수요에 맞게 배분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법정배분제도의 경직성을 완벽하게 완화할 수는 없다는 한계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총배분비율만 35%의 범위 내에서 조정되고, 10개의 법정배분대상 기관·기금 및 각각의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므로⁸⁾, 법정배분금 중 일부를 여유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자체 재원이 풍부하여 재정적으로 외부에 의존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기관·기금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가감 조정폭인 해당 배분비율의 20% 범위 내에서만 감액이 가능함. 결과적으로 나머지 80%의 재원은 기관의 성과나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재원 배분의 최적화를 가로막는 '재정 칸막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8) 기획예산처는 현재 「복권법」이 개정되더라도 「복권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임.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법정배분비율을 “35% 이내”로 변경하여 가감 조정한 잔여재원을 공익사업 재원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2004년 「복권법」 제정 및 복권 통합 당시의 복권 발행 기관 수입 보전에 기초한 현행 법정배분제도 자체를 재검 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를 위해 법정배분 대상기관의 사업을 순차 적으로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지원하거나, 「복권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익사업 체계로 전환하여 매년 사업의 타당성과 성과에 따라 재원을 유연하게 배분함으로써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 <u>는</u>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 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u>자금소요</u> 및 제22조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 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 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 <u>100분의 35</u> <u>의 범위 안에서</u> 복권위원회가 정하 <u>는 비율의 금액을</u> ----- ----- -----. ----- <u>자금소요, 여유자</u> <u>금운용 현황</u> ----- ----- ----- ----- -----.
1. ~ 11. (생략) ② ~ ⑥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153

별첨 1

현행 법정배분기관 현황

법정배분기관	배분비율 (35% 기준)	용도
1. 과학기술진흥기금	12.583% (4.404%)	-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
2. 국민체육진흥기금	10.371% (3.630%)	-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 국민체육시설 확충 - 학교 운동경기부 육성 - 생활체육 보급 및 진흥 - 국내외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
3. 근로복지진흥기금	5.310% (1.859%)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4.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6.356% (2.225%)	- 중소기업 창업지원 -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 지방중소기업 육성 - 산업기반 조성
5. 국가유산보호기금	14.286% (5.000%)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등
6. 지방자치단체	17.267% (6.043%)	- 지자체 문화·예술·복지 - 지역개발사업 -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
7.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 업특별회계	17.267% (6.043%)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업·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등
8.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286% (1.500%)	사회복지사업
9.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5.846% (2.046%)	수목원, 휴양림, 수목장림 조성, 산림복지진흥 사업 등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6.428% (2.250%)	국가유공자 진료, 건강관리, 보호, 복지시설 운영 등
계	100% (35%)	

별첨 2

법정배분제도 및 법정배분비율 가감조정제 개요

- ① (법정배분제도) '04년 복권법 제정당시 복권발행 통합의 조건으로 당시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금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복권법§23)

※ 10개 법정기관에 매년 복권수익금의 35% 의무배분

(’09.12. 문화재기금 추가로 배분비율 증가 : 30%→ 35%)

< 법정배분기관 배분율 현황 >

(단위 : %, 억원)

구 분	과학기술 진흥기금	국민체육 진흥기금	근로복지 증진기금	중소기업 진흥기금	국가유산 기 금	지 방 자치단체	제 주 도 특별회계	사회복지 모 금 회	산림환경 증진자금	보훈복지 의료공단	계
(35%기준)	4.404	3.630	1.859	2.225	5.000	6.043	6.043	1.500	2.046	2.250	35

- ② (가감조정제) 법정배분제도로 인한 재원배분의 경직성·비효율성 완화를 위해 「법정배분비율 ±20% 가감조정제」 도입(복권법§23)

- ① 1단계(성과배분) : 성과평가(90%)와 자금소요평가(10%)를 가중평균한 기관순위에 따라 하위기관에서 감액하여 상위기관에 추가 배분

- 상·하위기관에 배분율의 증·감액률(20%, 15%, 10%, 5%) 적용, 기관별 증·감액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정률 반영

구 분	해당기관	보 정 율
배분율 10%미만	사회복지모금회 등 5개 기관	증·감액률×1.0
배분율 10~15%	과학기술기금, 국민체육기금, 국가유산기금	증·감액률×0.9
배분율 15%이상	지방자치단체, 제주도	증·감액률×0.8

- 가감 배분 후 잔여 재원이 발생시 3단계 재원으로 활용

- ② 2단계(추가감액) : ①기관 자체수입·여유자금 등 현황분석* 결과 법정배분액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 + ②법정배분액을 통해 기금조성 재원이 편성된 경우

→ 차년도 사업수요를 고려하여 최대 20% 범위 내 감액 가능

- ③ 3단계(추가가산) : 가감 배분 후 잔여재원 + 추가 감액재원을 사업계획 심사 후 배분

- 사업수요 및 기관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최대 20% 범위 내 증액*

* 1단계에 적용된 기관별 보정률은 적용하지 않음